

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
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다) 해당 인증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라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2호	업무정지 90일	지정취소	
다.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3호	업무정지 90일	업무정지 180일	지정취소
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4호	업무정지 90일	업무정지 180일	지정취소
마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5호	지정취소		
바.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6호	업무정지 90일	지정취소	
사.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7호	업무정지 90일	지정취소	